

친특허정책의 확산과

특허전쟁

글 | 김 현 _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hyunkim@sechanglaw.com

미국은 대공황 이후 특허제도에 의한 독점권의 부여가 대공황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서 미국 경제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팽배해지면서 반독점정책이 1980년 초반까지 강화 및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은 1970년대부터 해외시장에서 점차 일본, 유럽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오일 쇼크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의 위축, 그리고 일본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의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협받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1975년에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제록스에 경쟁사와 협력사 모두에게 복사기 관련 특허를 라이선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본의 쓰나미라는 기업이 저가의 덤핑 물건으로 미국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제록스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美, 30여년간 '친특허정책' 유지해 세계 패권 재장악

이러한 상황인식 및 결과는 미국이 친특허정책으로 선화하게 만들었는데, 1980년대 초의 대표적인 정책의 변화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창설로 대표되는 특허 보호의 강화와 바이돌법 및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으로 대표되는 기술 확산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의 확고한 기초가 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특허를 보호하고, 기술이전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9년에는 미국 상무부 내에 기술관리국이, 1993년에는 전 연방 정부기관

을 통한 과학, 우주 및 기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어 기술 확산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각급 관련 기관에서 쏟아낸 여러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에 있어서 특허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경제성장과 기술정책에 있어 특허권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은 위와 같은 친특허정책을 거의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전반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이와 같은 권리의 확대는 화학, 제약,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미국은 다시금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10년 이상의 장기호황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또한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쌍무협정 및 다자간협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자신의 특허제도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특허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국제사회에까지 관철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기본기술을 개량하여 상품화하는 추격형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최근에는 추격해오는 아시아 제국의 생산기술에 대한 경쟁력 상실 우려와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지난 10년 이상의 장기불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일본은 경제의 장기침체 늪으로부터 벗어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 미국의 예로부터 배운 기술 확산 정책을 추진하였



고, 2002년에는 지적재산전략대강의 발표 및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주체가 되어 친특허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였다.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계획에 따라 입법이 이뤄져 2005년 4월 1일부터 도교고 등법원 내에 지적재산고등법원을 설치해 특허사건을 전담하였고, "지적재산권관계 소송사건의 충실·신속화는 정부 전체로서 몰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선언하여 전반적인 제도의 검토 및 개선 노력을 하였다.


우리도 특허권 보호 강화하는 제도·정책 실현대야

우리의 경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동력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여전히 그 그늘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일본보다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나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에서의 LG 전자의 선전 등 일부 기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

리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센 추격 앞에 샌드위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우리는 새로운 국가 발전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등을 통하여 기술의 확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국가 기술지도를 작성하여 2012년 5대 과학기술기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 발전 전망 하에서 국가의 주도적 노력으로 세계적 추세인 '친특허정책'이 강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학에서는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을 통하여 대학 기술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

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특허 및 기술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 및 기술이 지니는 가치가 자본, 토지 등 다른 생산요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특허권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특허권의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조만간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및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특허법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바, 사법제도의 측면에서도 특허법원에 의한 특허사건의 전담, 특허소송 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진 신속하면서도 확고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진정한 '친특허정책'이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와 관련한 사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해본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과 코넬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 법률고문,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